

고맙습니다.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
1. 「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관련입니다.
2.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이번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(관련자료 첨부) 하시어 우리 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4. 아울러, 붙임의 개정고시(안)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입법/행정예고) 및 식품안전나라(<http://foodsafetykorea.go.kr>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 > 식품표시정보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(공고 제2022-295호) 1부

2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 부처, 시·도 관련 부서, 관련 협회·단체, 보건복지위원회 등

주무관 **정현정** 연구관 **문재은** 식품표시광고정 책과장 **박동희** 전결 2022. 6. 30.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9445 (2022. 6. 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190 팩스번호 043-719 / silverjung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